

공용건축물(가조119 안전센터) 증축 동의안

의안 번호	2020-129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사유

-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가조면 마상리 467-6번지 거창군 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서,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협소한 청사 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상 2층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요청한 것으로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증축을 통해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안전을 도모코자 함

2. 가조119안전센터 현황

- 청사현황
 - 토지(소유 : 거창군) : 가조면 마상리 467-6, 대지, 1,026㎡
 - 건물(소유 : 경남도) : 철근콘크리트조, 2층, 연면적 408.95㎡
- 운영현황
 - 관할지역 : 3개면(가조면, 가북면, 남하면)
 - 면 적 : 212km²(거창군 전체의 26.4%)
- 그간 추진내역
 - 2005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
 - 2010년 안전센터 승격 후 필수공간 협소로 2013년 1층과 2층 증축
 - 2016년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물탱크 차량 공간과 적재공간 증축
 - 2020년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증축 협의 요청

3. 사업계획

- 증축규모 : 266.8㎡ / 지상 2층(1동) / 철근콘크리트조
- 사업비 : 1,061,726천원

4. 추진일정

- 거창군 협의 및 거창군 의회 동의 : '20. 12월
- 무상사용 협의 통보 : '20. 12월
- 공사착공 및 준공 : '21. 3월 ~ 9월

5.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: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: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: 사용료의 감면

가조 119안전센터

■ 전 경



건물 정면



건물 우측



건물 좌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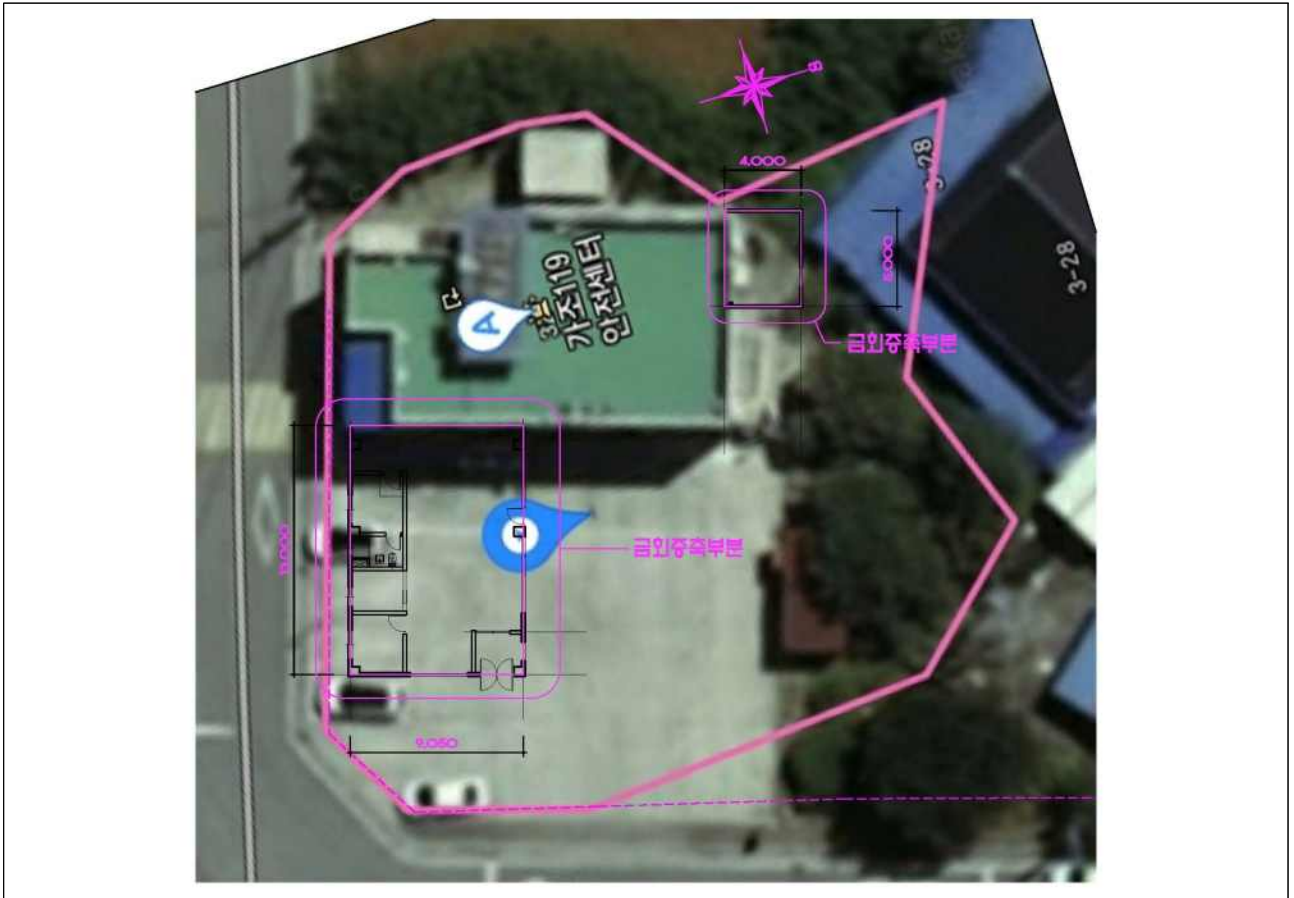


차고

■ 건물위치



■ 위성입체도

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 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